

---

第69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倫理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4年3月23日(水) 午前11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및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및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尹鎭商 議員 外 1人 發議) ... 2面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및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對한修正動議案(崔明鎭 議員 外 1人 發議) ... 12面
- 

(11時 17分 開議)

○委員長 李永和; 座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倫理特別委員會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第69回 臨時會 會期 中 바쁘신 常任委員會 活動에도 불구하고 오늘 倫理特別委員會 會議를 開催하게 되었음을 理解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委員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倫理特別委員會가 構成된 이후 議員이 지켜야 할 基本的인 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을 制定하여야 한다는 議員님들의 뜻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懇談會 및 逐條審議 結果, 作成된 案을 지난 本會議 開會式 때 全 議員에게 配付, 事前意見を 收斂을 해서 本 綱領案 및 實踐規範案을 作成하였는 바, 오늘

本 委員會에 上程하게 된 것입니다.

---

1.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尹鎭商 議員 外 1人 發議)

(11時 19分)

○委員長 李永和;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은 尹鎭商 委員 外 1人的 發議와 趙熙濬, 具齊南, 金鍾雄, 梁元模, 林承后 委員의 贊成으로 書面 發議가 되었으므로 正式 議題로 成立되었습니다.

發議者이신 尹鎭商 委員 나오셔서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鎭商 委員; 尹鎭商 委員입니다.

우리 倫理特別委員會가 지난해 11월에 構成되어 그 동안 議員이 지켜야 할 자기 規범을 만들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차례에 걸친 懇談會 및 逐條審議를 한 結果, 우리 委員會 나름대로의 整理된 結果를 成案하여 지난 第69回 臨時會 開會式 때 전체 議員님들께 配付, 다시 한 번 좋은 意見을 收斂하여 오늘 최종적으로 議員倫理綱領 및 議員倫理實踐規範을 本 倫理特別委員會에 提案코자 합니다.

우선 倫理綱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主權者인 市民으로부터 市政을 委任받은 市民의 代表者로서 그 任務를 성실히 遂行하며, 議會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地方自治 發展의 초석이

되기 위하여 市民의 代表者로서 人格과 識見을 함양하고, 市民을 위한 奉仕者로서 市民의 福利增進과 市政發展을 위하여 성실하게 職務를 遂行하며, 議政活動을 活性化시키기 위하여 機會均等과 討論文化 定着에 努力할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議員倫理實踐規範에 대하여 說明드리자면, 市民으로부터 委任받은 市政을 성실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議員 스스로 지켜야 할 行動規範을 정하고 보다 次元 높은 議政活動과 市民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기 규율을 規定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主要骨子로는,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품위유지 및 청렴의무와 職位를 남용하여 부당한 影響力 行使를 금지하고 職務上 知得한 公的機密을 누설하지 말 것, 財産登錄 및 申告의 義務를 성실히 하고 虛禮虛飾 行爲를 禁止하는 家庭儀禮에 관한 法律을 遵守하며, 會期 中 正當한 理由가 없는 한 성실히 議會에 出席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쯁록 그 동안 綱領과 規範 制定을 위하여 努力하신 여러 委員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滿場一致로 議決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盡善盡美한 法과 制度는 없는 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되는 議政活動을 통해서 만약에 修正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그때 다시 改正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永和; 尹鎭商 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을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여러 委員님들 異議가 없으십니까?

○崔明鎭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崔明鎭 委員님 發言하십시오.

○崔明鎭 委員;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에 보면 서울特別市議會 議員은 主權者인 市民으로부터 市政을 委任받은 市民의 代表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市政을 委任받은 句節이 있는데 憲法이나 法律 그리고 條例 어디를 봐도 市政을 委任 받았다는 句節은 없습니다. 즉, 法과 慣習에 의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記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즉, 憲法과 法律, 또 條例에 보면 議政을 委任받은 句節은 있어도 市政을 委任받은 句節이 없습니다.

특히 이 倫理綱領案의 草案이 國會議員의 倫理綱領에 基礎를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國政에 對比되는 用語 選擇이 市政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市政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國政에 대한 對比되는 用語는 地方議員들이 選擇할 수 있는 用語는 議政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憲法 第3章에 보면 우리 나라 現行制度 아래에서는 國家의 議會를 國會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憲法 第118條第1項에 보면 地方自治團體의 議會를 단순히 議會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國會에서 하는 모든 活動을 國政이라고 한다면 議會에서 하는 모든 活動은 議政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國會議員의 倫理綱領에 國政에 對比되는 用語로 選擇한 市政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市政을 委任받은 句節은 없지만 市政에 대한 牽制와 監視 또는 地方議會에서의 立法機能은 우리가 委任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憲法이나 法律, 또 條例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市政이라는 用語 選擇을 하려면 그 뒤에 市政에 대한 立法 그리고 市政에 대한 牽制, 監視, 批判 이런 句節을 委任 받았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즉, 그런 말을 단 두마디 用語로 표현한다면 議政이라는 用語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市政을 委任받은 이 市政이라는 用語는 잘못 選擇된 用語이기 때문에 議政으로 고친 뒤에 이 倫理綱領을 通過시키는 것이 合理的이고 또 사리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文書로서만 存在할 수 있는 倫理綱領案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서울市民 또 그 서울市民들의 눈과 귀인 言論社記者들, 또 市 公務員, 이분들이 볼 때에 저희들이 만든 倫理綱領에서의 用語 選擇이 잘못되어진다면 個個人의 名譽를 떠나서 서울市議會 자체에 중대한 不名譽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本 委員은 강력하게 市政이라는 用語를 議政으로 바꾼 뒤에 이 倫理綱領을 通過시켜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同僚 委員님들의 사려깊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永和; 具齊南 委員님 發言하십시오.

○具齊南 委員; 倫理綱領, 原案대로 通過해 주실 것을 動議를 하면서 이제 막 崔明鎭 委員님의 市政을 議政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本 委員의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中央集權制 制度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地方化 時代를 맞아서 民主主義의 基礎인 基礎議會나 廣域議會가 다시 復活한 지 이제 3年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基礎議會나 廣域議會나 역시 政治의 地方化 時代에 살고 있는 現實에서 우리 서울市議員들은 서울市民을 위한 서울市政을 委任받았다고 하는 것이 廣義解釋上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附言해서 말씀드

리면 서울市民을 위해서 서울시는 行政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市民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議會가 있습니다. 서울시議會는 서울시 行政이나 모든 서울시의 우리 서울시議會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서울市民의 代表입니다.

서울市政을 마치 서울시 行政이라고 하는 固定觀念, 그 하나만으로 解釋하기 때문에 그런데 本 委員은 서울시 行政이나 서울시 議政이나 구태여 따져서 議政으로 고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 表現이나 廣義의 解釋이 우리는 서울市民을 위해서 서울市民을 위한 代表이고, 서울시 行政을 監視 監督할 수 있고, 또 모든 法을 條例制定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市政이라 하여도 廣義解釋上으로 절대 틀리지 않다고 本 委員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原案은 그대로 通過해 줄 것을 여러 委員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意見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崔明鎭 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崔明鎭 委員; 지금 倫理綱領案을 提案하신 尹鎭商 委員님께 確認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倫理綱領案에 보면 市政을 委任받은 市民의 代表라고 그랬는데 主權者인 市民으로부터 市政을 委任받은 法的인 根據條項, 憲法과 法律과 條例에 어떤 條項이 市政을 委任받은 條項이 있는지 提示해 주셨으면 합니다.

○尹鎭商 委員; 此後에 地方自治法을 보고서 그에 대한 제가 答辯을 드리겠고, 本 委員이 보기에 國家의 政務를 맡아오는 國會議員은 國政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울特別市の 千百萬 市民의 代表者로서 서울시議會가 構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議政活動이라면 議會에서 活動하는 것이고, 우리가 住民이 뽑아준 議員이기 때문에 서울市政을 잘 다스

리라는 뜻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는 市政이라고도 認定을 합니다.

하나 지금 崔明鎭 委員께 市政에 대한 法을 此後에 提出해 드리고, 저는 그러면 議政이라는 뜻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法律을 한번 提示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永和; 崔明鎭 委員 말씀하세요.

○崔明鎭 委員; 市政을 委任받은 根據提示가 되지 못한다면 이 倫理綱領案은 通過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重要的 核心的인 事項입니다. 法에 根據하지도 않는 委任事項을 委任받은 것처럼 서울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에 句節을 插入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過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指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本委員이 指摘했습니다만, 憲法 第118條第1項에 보면 地方自治團體 議會를 議會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憲法 第3章에 보면 國家議會를 國會로 하고 있습니다. 國會에서 活動하는 것은 그래서 國政입니다. 地方議會에서 活動하는 것은 議政입니다. 市政이 아닙니다. 地方議政, 地方議會에서 하는 것은 議政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憲法 第118條第1項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根據條項을 提示해 주셔야 됩니다. 倫理綱領案이 通過되기 전에 가장 確認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委員長 李永和; 金鍾雄 委員 말씀하십시오.

○崔明鎭 委員; 아니, 尹鎭商 委員님께서 이것 根據條項을 提示해 주셔야 돼요, 法의 根據條項을.

○委員長 李永和; 尹鎭商 委員은 代表로 아까 提案을 하셨고 다른 委員님들 모두 贊成하신 분들 發言을 하십시오.

○金鍾雄 委員; 金鍾雄 委員입니다.

지금 崔明鎭 同僚 委員께서 指摘한 事項도 一理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原案에 있는 市民으로부터 市政을 委任받았다는 그 文案에 대해서도 무난한 文脈이고 또한 用語選擇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個人的으로 알고 있는 識見으로는 市政이라는 말을 우리가 市 執行部에서 行하는 市 行政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市議會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行爲도 市政의 部分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國政을 나라를 다스리는 政治行爲라고 보았을 때 國會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國政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政治라는 用語 自體는 立法, 司法, 行政을 統括해서 다스리는 것을 政治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特別市에 한해서 市議員으로서 서울市の 政治를 맡고 있다는 包括적인 概念으로 보았을 때 이 市政은 行政도 될 수 있지만 우리 市 全體를 다스리는 政治行爲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包括적인 意味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妥當하다고 봅니다.

지금 崔明鎭 委員께서 議政 얘기를 합니다. 憲法에 地方議會에 있는 것은 전부 議會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憲法에서 全國의 各 議會를 다 明示할 수 없으니 地方自治團體에 있는 것을 議會라고 한다 했지만 우리가 엄연히 서울市에도 서울特別市議會가 있는가 하면 各 區에는 서울特別市 무슨 區議會가 있습니다. 郡에는 郡議會가 있지, 이것이 그냥 시골의 郡議會나 道에 있는 道議會나 우리 서울特別市議會나 물론 地方議會라는 概念은 같습니다만, 그 役割은 그 地域의 주어진 與件에서 다 틀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서울特別市民的의 代表로서 나와 있는 市民代表들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서울特別市에 대한 政治를 하

는 代表者들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議政이라고 해서 議員들이 하는 것을 議政이라고 하는 것은 具體的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市民들이 우리에게 줄 때는 서울特別市の 全般的인 發展을, 市民의 生活을, 전부가 千百萬이 다 나와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代表로서 나와서 지금 政治를, 우리의 行爲는 지금 政治行爲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市政이라는 말이 무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尹鎭商 委員이 提案하신 原案에 나는 再請을 하면서, 이 文案은 國語辭典에서 市政은 市 行政이다 하는 얘기가 일부 國語辭典에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用語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두 個, 세 個로도 解釋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市政이 市 行政만이 아닌, 本委員이 解釋하는 市政은 바로 우리 서울特別市 全體에 關한 政治行爲라고 나는 이렇게 解釋하면서, 이 단어는 그런 行政에 局限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全般에 대한 立法, 司法, 行政을 統括한 거기에 대한 政治行爲라고 보았을 때 우리 市民代表들로서는 충분히 使用할 수 있는 適切한 用語라고 判斷이 되어서 贊成發言을 하는 바입니다.

○崔明鎭 委員; 방금 金鍾雄 委員님께서 서울시에서도 立法, 司法, 行政을 全部 總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誤謬를 범하고 계십니다.

○金鍾雄 委員; 政治行爲를 說明한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崔明鎭 委員; 지금 서울시에 立法, 司法이 같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큰 誤謬가 있고, 두번째 問題는 憲法에 地方自治團體의 議會를 議會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憲法 第118條第1項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否定하시면 안됩니다.

○金鍾雄 委員; 아니, 議會는 분명히 議會인데그 議會의 性格이 서울市議會와 시골 郡議會를 같은 議會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崔明鎭 委員; 지금 가장 여기서 核心的인 問題는 우리가 法과 條例라든지 憲法에 根據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市政을 委任받은 根據條項이 提示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議政이라는 用語에 대해서는 法에나와 있습니다. 地方自治法에 나와 있어요. 地方自治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議員의 權限과 任務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議員의 權限과 任務, 議會의 權限과 任務에 대해서는 議政이라는 用語로 표현해야 합니다, 두 마디로 要約을 하면. 그래서 議政이라는것은 우리가 서울市民으로부터 委任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法的 根據를 가지고 있지만 市政을 委任받았다는 것은 서울市 執行部가 市政을 委任받았지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어선택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金鍾雄 委員; 그래서 崔 委員 얘기도 자꾸 너무 規定된 얘기에서만 局限하지 말고 우리가 權限과 任務를 보았을 때 우리의 權限과 任務가 바로 무엇입니까? 崔 委員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崔明鎭 委員; 自治團體에 대한 立法, 立法이라는 것은 條例制定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議會에서. 條例制定하고 自治團體에 대한 牽制와 監視, 批判 이런 것으로 要約이 됩니다, 크게 봐서. 그러면 自治團體에 대한 議決權이나 牽制, 監視, 批判 이런 것은 議政이라는 用語로 표현이 됩니다, 압축을 하면. 議政活動이라는 것은 地方自治에 대해서 議決도 해 주고, 牽제도 하고, 監視도 하고, 批제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서울

市로부터 委任을 받은 것은 事實이지 않습니까?

○金鍾雄 委員; 그 行爲를 나는 그것은 同感합니다. 그 行爲 自體를 要約했을 때 우리 政治行爲가 아닙니까?

○崔明鎭 委員; 그것을 議政이라고 한다고요.

○金鍾雄 委員; 그 行爲가 政治行爲 아닙니까? 우리 政治의 바운더리가 지금 全國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區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特別市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市政이 맞다는 것이예요.

그 行爲 自體가 政治行爲이니까 우리는 서울特別市の 市議員이니까 市政이라는 用語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崔明鎭 委員; 法과 條例에 根據하지 않은 主觀的, 客觀的인 論理나 名分이나 妥當性이 缺如된 主觀的인 主張만 가지고 우리가 용어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重要的 것은 法에 根據해서 용어선택을 해야 됩니다. 法에 根據를 하려면 議政이라는 用語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具齊南 委員;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具齊南 委員님 發言하십시오.

○具齊南 委員; 지금 우리 原案을 그대로 通過시키자는 動議가 나왔고 再請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反對意見도 나왔습니다. 委員長님께서 이 論議를 繼續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意見이 集約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이것을 會議를 進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李永和; 네, 알겠습니다. 양쪽의 意見이 모두 一理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모두 意見內容을 충분히 納得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討論을 終結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崔明鎭 委員께서 本 倫理綱領案에 대해서

방금 主張한 바와 같이 修正하자는 動議가 있었습니다. 本 動議案에 再請있으십니까?

○林承后 委員; 再請합니다. 贊成者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崔明鎭 委員; 提案者 名單에서 林承后 委員은 빼달라 이거예요.

○委員長 李永和; 林承后 委員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贊成에 대한 말씀을.

○林承后 委員; 林承后 委員입니다.

崔明鎭 委員의 意見에 意見을 같이 하면서, 國語辭典에 보면 市政이라고 하는 것은 市の 行政 즉, 執行部の 그런 概念에서 定義를 내렸고, 또 議政이라는 것은 議會의 政治다 이렇게 우리 國語辭典에 定義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市政을 廣義로 생각할 때 提案者의 意見에 同意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具體的으로 표현을 한다면 議政을 委任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趣旨에서 崔明鎭 委員의 修正案에 再請합니다.

---

2.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및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對한修正動議案(崔明鎭 議員 外 1人 發議)

(11時 47分)

○委員長 李永和; 本 案件은 林承后 委員님의 再請이 있었으므로 崔明鎭 委員의 修正案은 의제로 成立하였습니다.

다른 委員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먼저 崔明鎭 委員님이 動議하시고 林承后 委員님이 再請하신 修正案에 대해서 贊成하시는 분은 舉手해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다음은 修正案에 대해서 反對하시는 委員님 舉手해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 대한 崔明鎭 委員님의 修正案은 在席 委員 8名中 贊成이 6名, 反對가 2名, 棄權 없습니다.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崔明鎭 委員; 贊成이 5名인데 왜 否決이 돼요?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修正動議案에 대해서 贊成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委員長 李永和; 修正합니다.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 대한 修正案은 在席 8名 中에 贊成 2名, 反對가 6名으로 否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崔明鎭 委員님의 修正案이 否決되었으므로 尹鎭商 委員님이 發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委員님들 모두 贊成한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에 대하여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崔明鎭 委員; 異議 있습니다.

○委員長 李永和; 그러면 表決토록 하겠습니다. 尹鎭商 委員님이 發議하신 原案대로 贊成하시는 분 舉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또 反對하시는 분 舉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舉手表決)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및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은 在席 委員 8名 中 贊成 6名, 反對 1名, 棄權 1名으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綱領案

(뒤에 실음)

.....  
서울特別市議會議員倫理實踐規範案

(뒤에 실음)

.....  
○委員長 李永和;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1時 52分 散會)

---

○出席委員

李永和 尹鎮商 趙熙濬

具齊南 林承后 梁元模

金鍾雄 崔明鎭

○專門委員

金泰鎬